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 제123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식품표시관리규정>수정에 관한 결정>이 2009년 8월 28일 이미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표하며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9년 10월 22일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식품표시관리규정>수정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식품표시관리규정>에 대해 아래의 수정을 할 것을 결정한다.

1. 제1조 수정: 식품표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표시의 기재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그리고 품질사기를 방지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안전관리감독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등 법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제8조 첫 번째 문단 수정: '식품표시에는 생산자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생산자 이름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 되어야 한다'

3. 제9조 첫 번째 문단 수정: '식품표시에는 식품 생산일자, 유통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9조 두 번째 문단 수정: '에탄올 함량이 10%이상(10%함유)인 술, 식초, 식용소금, 고체설탕류는 보존기간 명시할 하지 않아도 된다'

4. 제10조 첫 번째 문단 수정: '정량 포장된 식품의 표시에는 반드시 순함량이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규격이 표기되어야 한다. 고체, 액체물질이 모두 포함된 식품의 경우 순함량을 표기하는 것 이외에도 고형물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5. 제11조 첫 번째 문단 수정: '식품표시에는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재료의 명세가 기재되어야 한다' 에 한 문단을 추가하여 제11조 4번째 문단을 '영유아와 기타 특정 인원에게 제공되는 주/부식품에는 주요 영양성분과 함량이 표기되어야 한다'로 삼는다'

6. 제12조 수정: '식품표시에는 기업이 집행하는 제품표준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

7. 제26조 수정: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실시조례 등 법 규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8. 제28조 수정: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경고표시 또는 중문 경고설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9. 제30조 삭제

본 규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식품표시관리규정>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수정을 하고 다시 공표한다.

#### 식품표시관리규정

(2007년 8월 27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02호 공표. 2009년 10월 22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식품표시관리규정>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표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표시의 기재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그리고 품질사기를 방지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안전관리감독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등 법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생산(분할포장 포함), 판매한 식품의 표시의 기재와 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식품표시란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되는 식품명, 품질등급, 제품용량, 복용 또는 사용방법, 생산자 또는 판매자 등의 정보의 문자, 부호, 숫자, 도안, 기타 설명의 통칭이다.

제4조 국가품질감독검사항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직권 범위 내에서 중국 품질표시의 관리감독 작업의 조직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처는 직권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표시 관리감독 작업을 책임진다.

## 제2장 식품표시의 기재내용

제5조 식품 또는 해당 포장 상에는 표시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과 행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예외로 한다.  
식품표시내용은 반드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되고 쉽게 이해되며 과학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제6조 식품표시에는 반드시 식품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식품명에는 식품의 실제 속성이 드러나야 하고 아래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1) 국가 표준, 업계표준에서 식품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 업계표준에서 규정한 명칭을 채택해야 한다.
- (2) 국가 표준, 업계표준에서 식품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나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상용명 또는 속칭을 사용해야 한다.
- (3) '새로 개발된 명칭', '독특한 명칭', '음역(音譯)한 명칭', '상호명', '지역 속어 명칭', '상표명' 등 식품의 속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는 명칭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명칭의 부근에 동일한 서체로 본 조항(1), (2) 에서 규정한 하나의 명칭 혹은 카테고리(유형속성)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 (4) 2종 또는 2종 이상의 식품을 물리적으로 혼합시켜 외관상으로 볼 때 상호 분리되어 보이지 않는 식품의 명칭에는 해당 식품의 혼합속성과 카테고리(유형속성)명칭이 반영되어야 한다.
- (5) 동식물 식품을 원료로 하고 특정 가공공정을 채택하여 제작하며 기타 생물의 체형, 기관, 조직 등을 형상화한 식품의 경우 반드시 명칭의 앞에 '인조', '유사' 등의 글자를 넣어 해당 식품의 실제 속성의 카테고리(유형속성)명칭을 기재한다.

제7조 식품표시에는 식품 생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식품 생산지는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과 시를 기재해야 한다.

제8조 식품표시에는 생산자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생산자 이름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 되어야 한다'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상응하는 기재를 한다.

- (1) 법에 의거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 또는 자회사는 각자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 (2) 법에 의거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회사의 지사 또는 회사의 생산기지는 회사와 지사 또는 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모두 기재하거나 회사의 명칭과 주소만 단독으로 기재한다.
- (3) 식품의 생산가공을 위탁 받고 대외적 판매는 책임지지 않는 경우 위탁한 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에 대해 위탁한 기업이 위탁 가공하는 식품의 생산허가증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탁한 기업의 명칭, 주소, 위탁 받은 기업의 명칭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 (4) 분할포장하는 식품에는 분할포장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분할포장이라는 글자를 표기한다.

제9조 식품표시에는 식품 생산일자, 유통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에탄올 함량이 10%이상(10%함유)인 술, 식초, 식용소금, 고체설탕류는 보존기간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의 표기방식은 국가표준 규정을 따르거나 년, 월, 일 표시를 채택한다.

제10조 정량 포장된 식품의 표시에는 반드시 순함량이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규격이 표기되어야 한다. 고체, 액체물질이 모두 포함된 식품의 경우 순함량을 표기하는 것 이외에도 고형물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순함량은 식품 포장상에서 식품의 명칭과 동일한 페이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순함량의 표기는 <정량포장상품계량 관리감독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식품표시에는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재료의 명세가 기재되어야 한다. 배합재료의 명세에서 배합재료는 식품을 생산·가공할 때 들어가는 양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한다.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국가표준규정에 따른다. 식품에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배합재료 명세의 식품첨가제 항목에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기타 식품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명칭, 종류, 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의 사용 범위와 사용량은 국가표준규정에 따른다. 영유아와 기타 특정 인원에게 제공되는 주/부식품에는 주요 영양성분과 함량이 표기되어야 한다'로 삼는다

제12조 식품표시에는 기업이 집행하는 제품표준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13조 식품에 적용하는 표준에서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공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기재를 해야 한다.

제14조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의 식품표시에는 식품생산허가증 번호와 QS 마크가 기재되어야 한다. 생산·가공을 위탁하고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의 위탁 의뢰기업이 위탁·가공식품 생산허가증을 구비한 경우 위탁 의뢰기업 또는 위탁 받은 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제15조 비(非)식용제품이 혼적 되어 잘못 먹기 쉽고 적절히 사용되지 않아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이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에 중문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임상·의학적으로 특정 인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하기 쉬움이 증명된 경우
- (2)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거친 경우
- (3) 유전자변형(GMO)식품에 속하거나 법정 유전자변형 원료에 속하는 경우
- (4) 법 규정, 국가 표준 등의 규정에 따라 기타 중문 설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

제17조 식품이 해당 명칭 또는 설명 상에 '영양', '강화' 등의 글자가 기재된 경우 반드시 국가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의 영양표와 칼로리를 기재해야 하고 국가표준에서 규정하는 정량표시를 해야 한다.

제18조 식품표시에 아래의 내용이 표기되어서는 안 된다.

- (1) 질병 예방, 치료 작용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 (2) 비(非)보건식품이 보건기능이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 (3) 속이거나 오도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또는 소개하는 내용
- (4) 추가된 제품설명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 내용
- (5) 글자 또는 도안이 사람들의 습성을 존중하지 않고 기만하는 묘사가 포함된 내용
- (6) 국기, 국장, 인민폐 등을 사용하여 표기한 내용
- (7) 기타 법 규정이나 국가에서 기재를 금지한 내용

제19조 아래의 식품표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 (1)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식품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기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 (3)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를 위조, 도용, 변조한 경우
- (4) 법률 상에서 금지한 기타 행위

### 제3장 식품표시의 기재형식

제20조 식품표시는 식품 또는 해당 포장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21조 식품표시는 최소판매단위의 식품 또는 포장 상에 직접 기재되어야 한다.

제22조 하나의 판매단위의 포장에 다른 품종의, 여러 개의 독립 포장된 식품이 포함된 경우 모든 독립 포장된 식품표시는 본 규정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판매단위의 외포장에 스며들거나, 각각 독립 포장된 식품의 모두 또는 일부에 강제 표기된 내용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판매 단위의 외포장에도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외포장을 쉽게 개봉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독립 포장된 식품에 모두 또는 일부 강제적으로 표기된 내용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외포장 상에 상응하는 내용을 중복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23조 식품표기는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표기의 배경색과 바탕색은 보색을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 식품표기에 사용된 글자는 규정된 중문표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등록된 상표는 예외로 한다.

식품표기에는 한어 병음 또는 소수민족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어도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문과 상응관계에 있는 글자여야 하며 사용된 외국어가 대응되는 중국어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등록된 상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식품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 면적이 20 평방미터보다 큰 경우 식품표시에 강제 표기되는 글자, 부호, 숫자의 높이는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식품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 면적이 10평방미터보다 작은 경우 식품명, 생산자명, 주소, 순함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시해도 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 규정에서 표기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 제4장 법적책임

제26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실시조례 등 법 규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본 규정을 제6조~제8조, 제11조~제13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는 경우 5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경고표시 또는 중문 경고설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29조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순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정량포장제품계량 관리감독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본 규정 제17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영양소, 칼로리, 정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는 경우 5,000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본 규정 제18조를 위반하여 식품표시에 금지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는 경우 10,000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식품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악영향이 초래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3조 식품 생산지를 위조하고 기타 생산자의 이름,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본 규정 제20조를 위반하여 식품표시가 식품 또는 해당 포장과 분리된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본 규정 제21조, 제22조 두 번째 문단,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본 규정 제22조 첫 번째 문단을 위반한 경우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식품표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작업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불법행위를 은닉하고 방조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본 규정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처의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 실시한다.

법률, 행정법 규정에 행정처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부칙

제39조 수출입식품표시의 관리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0조 본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41조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국가기술감독국이 공표한 <식품라벨불법행위적발규정>은 동시에 폐기된다.